



경기도의회 제391회(정례회)

제3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 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365번)

2026. 6. 23.(화)

여 성 가 족 평 생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창희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유효준 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10. 27.
3. 회부연월일 : 2025. 11.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 가. 2025년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되었던 청년기본소득 사업 재구조화가 무산됨에 따라, 지난 제382회 임시회 개정 이전의 조례 체계로 회귀하여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나. 청년기본소득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 경기도의회와의 협력과 동의를 의무화하여 제도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민주적 정당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청년을 “저소득 청년”으로 정의하여, 향후 차별화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4호).
- 나. 청년기본소득 지급 방법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였고, 긴급사항 및 저소득 청년 등 예외적인 경우에 도지사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

Ⅲ. 절차 이행 여부

1. 입법예고 및 집행부 협의 결과

가. 입법예고(2025. 9. 24. ~ 9. 29.) : 의견 없음

나. 집행부 협의

- 미래평생교육국 청년기회과 : 의견 미반영(청년기회과-11674, 2025. 10. 23)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 미첨부(의회 예산분석과)

- 「경기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Ⅳ. 검토의견

1. 주요 내용 검토

가. 제안취지와 필요성

-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382회 임시회(2025. 2. 20.)에서 개정된 청년기본소득의 지급 운영 방식을 다시 종전으로 회귀하고, 당시 삭제되었던 ‘저소득 청년’의 정의 규정을 재도입하려는 것임.

- 이는 「2025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변경계획」이 청년들의 취·창업

및 역량개발 지원, 지역화폐 정책 취지 및 집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분기별 지급 방식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수정됨에 따라, 지급 기준을 조례에 다시 명시하여 제도 운영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음.

- 다만, 현행 조례 제6조(지급액 및 지급방법)제2항은 지급 방법을 ‘도지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조례 개정 없이도 집행부가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종전 방식 적용이 가능함에 따라 조례 개정의 실익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요구됨.

나. 개별 조문 검토

- 안 제2조(정의)제4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청년을 ‘저소득 청년’으로 다시 정의하려는 것임. 이는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 중 일부에 대해 일시금 지급 등 차별화된 지급 방식을 적용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취지이며, 해당 정의는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판단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음.
- 다만 안 제2조(정의)는 안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저소득 청년” 대상 지급 방식과 연계되는데, 구체적인 검토 사항은 안 제6조(지급액 및 지급방법)에서 후술함(검토보고서 p.6 참고).

○ **안 제6조(지급액 및 지급방법)**는 현행 조례(2025년 3월 개정)가 청년기 본소득의 지급 시기 및 방법을 도지사의 재량(기본계획)에 위임하고 있음에도, 실제 지급은 2025년 3월 개정 이전과 동일하게 ‘분기별 지급’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조례에 다시 규정하려는 취지임.

- 그러나 본 개정안은 2025년 3월 개정된 사항을 불과 수개월 만에 종전으로 회귀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아래 신규 대비 조문표 참조)

현행 이전	현행	개정안
제6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제4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시·군은 도지사가 정하는 금액을 <u>분기별로 지역화폐</u> 로 지급한다.	제6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 ----- ----- ----- <u>지역화폐</u> ----- -----.	제6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제4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시·군은 도지사가 정하는 금액을 <u>분기별로 지역화폐</u> 로 지급한다.
② <u>청년기본소득은 지급 대상자가 지급 신청을 완료한 다음 분기부터 매분기가 시작되는 월의 20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다른 날짜에 지급할 수 있다.</u> 다만, 도지사	② <u>청년기본소득은 제4조제2항의 청년기본소득 기본계획에 따라 도지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u>	② <u>청년기본소득은 지급 대상자가 지급 신청을 완료한 다음 분기부터 매분기가 시작되는 월의 20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다른 날짜에 지급할 수 있다.</u> 다만, 도지사

는 사회적·자연적 재난 등으로 인하여 지급대상자에게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총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청년에 한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는 사회적·자연적 재난 등으로 인하여 지급대상자에게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총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청년에 한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첫째, 입법의 신뢰성 및 일관성 저해 우려임. 해당 조항은 2025년 3월 제382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기존 분기별 지급 규정을 삭제하고 지급 방법을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여, 저소득층 및 사회적·자연적 재난 상황 등 특수한 경우에 한정되었던 일시금 지급 방식을 모든 대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청년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한 취지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 시행 이후 심각한 폐해나 부작용이 확

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간 내 다시 2025년 3월 개정 이전으로 번복하는 것은 당시의 심사가 부실했거나, 현재의 발의가 다소 ‘즉흥적’이라는 인상을 주어 의회의 입법 권위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음.

- 둘째, 행정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 약화 우려임. 현행 제6조제2항은 지금 시기와 방법을 ‘도지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시스템 오류·공휴일·예산 사정 등 돌발적인 행정 변수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음.
- 반면 개정안과 같이 ‘매 분기 시작 월의 20일’로 날짜를 특정하거나 예외 사유를 일일이 열거하는 방식(구체적 열거)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 발생 시 행정의 탄력적인 대응을 제약하고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초래할 소지가 있음.
- 셋째, 시·군 조례 개정 현황 및 행정의 혼선 초래임. 이미 도내 24개 시·군이 지난 3월 도 조례 개정에 맞춰 관련 자치법규 개정을 완료한 상태임. 이러한 상황에서 도 조례가 단기간 내에 다시 과거 조례로 회귀할 경우, 시·군의 재개정 부담은 물론 지금 기준과 절차의 잦은 변경으로 인해 행정의 혼선이 가중될 것임.
- 넷째, 안 제2조제4호에서 ‘저소득 청년’을 정의하고 이를 안 제6조제3항의 지금 방식 특례와 연계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 체계하에서도 기본계

획 등을 통해 저소득 청년을 고려한 지급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실익 및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안 제6조제3항 및 이와 연계된 안 제2조(정의) 신설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 안 제11조(시행규칙) 현행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였는데, 해당 규정은 규칙으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규정이 아니라 집행명령에 해당하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보충적이거나 절차적인 사항 등 조례를 현실적으로 집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하는 것으로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음. 따라서 해당 규정을 삭제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음.

2. 종합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소득의 운영 기준과 관련하여 2025년 3월 개정 이전으로 다시 조정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다만, 조례 개정은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 만큼, 기존 운영 체계와의 연속성, 집행 과정에서의 행정적 부담, 현장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함.
 - 특히 운영 기준이 단기간 내 반복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제도에 대한 신뢰도와 행정 집행의 일관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개정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개별 조문별 검토 결과를 토대로, 제도 운영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집행 과정에서의 파급 효과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자치법규안 검토의견서

자치법규 제명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계 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검토 의견	<p>○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청년을 “저소득 청년”으로 정의하고, 청년기본소득 지급 방법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p> <p>- 청년기본소득 지급 방식의 변경 등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자치사무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상위법령 위배 등 문제점은 없으나 현행 조례와 같이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조례 개정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p> <p>※수정에 관한 사항은 붉은색으로 표시함</p> <p>※제안에 관한 사항은 푸른색으로 표시함</p>
검 토 기 간	2025년 9월 22일~
검토 담당자	행정6급(입법조사관) 심 지 연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의 검토의견을 보내드립니다.

2025년 10월 27일

경기도의회사무처 의정국 법제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귀하

붙임 2**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예산**

(단위: 천원)

연도	예산		
	합계(100%)	도비(70%)	시군비(30%)
2024년 본예산	133,640,000	93,548,000	40,092,000
2024년 최종예산	128,104,000	89,672,800	38,431,200
2025년 본예산	137,842,710	96,489,900	41,352,810
2025년 최종예산	133,531,000	93,471,700	40,059,300
2026년 본예산(안)*	86,535,710	60,575,000	25,960,710

*26년 도 재정상황으로 3/4분기 예산만 우선 편성

붙임 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조례 개정에 따른 시·군 조례 정비 현황 ('25년 3월 개정 이후)

연번	시·군명	조례명	공포번호	공포일(시행일)
1	경기도 가평군	가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3130호	2023. 9. 13.
2	경기도 고양시	고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2727호	2023. 11. 17.
3	경기도 과천시	과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2108호	2025. 7. 8.
4	경기도 광명시	광명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3254호	2025. 7. 4.
5	경기도 광주시	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1465호	2023. 6. 28.
6	경기도 구리시	구리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2334호	2025. 6. 17.
7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2412호	2025. 7. 9.
8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2587호	2025. 9. 30.
9	경기도 부천시	부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4232호	2025. 6. 30.
10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4730호	2025. 7. 10.
11	경기도 시흥시	시흥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2364호	2024. 4. 9.
12	경기도 안산시	안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2998호	2025. 7. 16.
13	경기도 안성시	안성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2160호	2025. 7. 25.
14	경기도 안양시	안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3750호	2025. 5. 16.
15	경기도 양주시	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1461호	2025. 6. 30.
16	경기도 양평군	양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3190호	2025. 9. 24.
17	경기도 여주시	여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1428호	2025. 7. 1.
18	경기도 연천군	연천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4078호	2025. 10. 14.
19	경기도 오산시	오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2294호	2025. 7. 1.
20	경기도 용인시	용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2634호	2025. 6. 30.
21	경기도 의왕시	의왕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2279호	2025. 8. 8.
22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3580호	2025. 6. 30.
23	경기도 이천시	이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2261호	2025. 8. 8.
24	경기도 파주시	파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2247호	2025. 7. 18.
25	경기도 평택시	평택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2523호	2025. 8. 6.
26	경기도 포천시	포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1789호	2025. 7. 16.
27	경기도 하남시	하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2432호	2025. 7. 1.
28	경기도 화성시	화성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2448호	2025. 8. 6.

2025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변경 계획

❖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2025년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추진계획(청년기회과-769호)」 변경 계획임

* 배움분야(학원수강료, 시험응시료)에 한하여 사용지역 확대(시·군→도,온라인) 매출제한 해제(12억이하→제한없음)

□ 추진배경

- 청년기본소득을 단순 소비 중심 지원 방식에서 청년들의 취·창업 및 역량개발 지원 강화를 위해 재구조화 추진
- 다만, 지역화폐 정책 취지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 측면도 고려, 기존 방식은 유지하되, 배움분야(학원수강료 및 시험응시료)에 한해 변경 추진

※ 사용 항목 제한 시 기존 사업들과의 중복 가능성이 높고(보건복지부 의견), 해당 항목에 대한 도내 또는 전국(온라인)으로 사용 범위 확대 및 매출 제한 해제는 지역화폐의 정책 목적과 상충

□ 사업개요

- (지원근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 (사업대상) 24세 청년(연속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 (사업량) 131,607명
- (지원내용)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분기별 25만원)

※ 단,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 (시행주체) 도, 성남시(조례 폐지)·고양시(시비 미편성) 제외한 29개 시군
- (소요예산) 1,378억원(도비 70%, 시·군비 30%)

[연도별 사업비]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업비	합 계	1,577	1,563	1,504	1,281	1,378
	도 비	1,104	1,094	1,053	897	965
	시·군비	473	469	451	384	413

□ 주요 변경사항

구 분	현행	변경	기존 변경안
사용 항목	제한 없음	좌 동	3개분야 9개항목* * 대학등록금, 어학연수, 학원수강료, 응시료, 면접 준비금, 창업 임대료, 통신키, 주거비(월세), 문화예술 등
지급 금액 및 횟수	분기별 25만원 ※ 단,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좌 동	01년생부터 일시금 100만원
사용 지역 및 매출 제한	주민등록표초본상 주소지 사군 內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거의 무제한 ※ 단, 백화점, 대형마트, SSM, 연매출 12억원 이상 점포, 유흥업소 등 제외	좌 동 단, 학원수강료 및 시험응시료는 사군→도내 및 온라인*으로 사용 지역 확대 및 매출 제한 없음 * 온라인의 경우, 지역화폐 결제수단이 연동된 사용처에 한하며, 사용처는 순차 확대 예정	01년생부터 도내 및 전국(온라인)* *청년기본소득 복지물 등

□ 향후 계획

- 2025년 변경 계획 및 운영지침 시달(→ 시·군 등) : ~ 25. 6월 2째주
※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신청 철회
- 배움분야(학원수강료·시험응시료) 청년기본소득 사용처 확대 적용
 - 오프라인 사용처 : ~9월
 - 온라인 : 협의완료된 사용처 등록(~9월) 및 순차적 추가 확대(9월~)
 - ※ 사용처 추후 공지
- 3·4분기 홍보 포스터 및 전단지 제작·배포(→ 시·군) : 6월, 10월
- 3·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 : 7~8월, 10~11월
- 3·4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 9월, 12월